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조 국·김준형·강경숙

서왕진 • 이해민 • 차규근

김재원 · 정춘생 · 김선민

한창민・황 희・허성무

신장식 · 염태영 · 황운하

민병덕 • 정태호 • 문진석

박은정 • 전종덕 • 이병진

김준혁 · 송재봉 · 윤종군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,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,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본문 중 "「군인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을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군인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25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 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형제자매

제37조제1항제4호 중 "자녀 또는 손자녀"를 "자녀,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) 제3 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유족"이란 군인 또는 군인	2
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	
가 부양하고 있던 <u>「군인연금</u>	<u>다음 각 목</u>
법」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	의 어느 하나
<u>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</u> 에	l
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	
만,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	
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	
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	
으로 본다.	
<u><신 설></u>	<u>가. 「군인연금법」 제3조제1</u>
	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
	<u>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</u>
<u><신 설></u>	나. 25세 미만인 형제자매와
	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
	연금의 등급에 해당하는
	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
	<u>형제자매</u>
3.・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	제37조(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
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	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

전)	1	상이	유족	연금	- 또	는	순
직유	-족연	금을	- 받	을	권리	가	있
는 ,	사람	o) [1음	각	호의	0	느
하니	네	해당	하는	경	우에	느	ユ
권리	를 /	상실형	한다.				

- 1. ~ 3. (생략)
- 4.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있지 아니한 <u>자녀 또는 손자</u><u>녀</u>가 25세가 된 경우
- 5. (생략)
- ② (생 략)

전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자녀, 손자녀</u>
또는 형제자매
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